

# 2015년도 제3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직 류	선발예정인원	합 계
제31회입법고시	일반행정	6명	15명
	법 제	2명	
	재 경	6명	
	사 서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사서직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도서관입니다.)

## 2. 시험과목

직류	제1차시험(선택형)	제2차시험(논문형)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정부회계 포함),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사서		필수(4) :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선택(1) : 사회과학사지,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제2차시험의 법률과목(입법과정론 포함)은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

### 3.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 과목당 90분)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4.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제50조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참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 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서직의 경우 1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31회 입법고시	※ 취소마감일 2. 6.(금) 17:00 2015. 1. 26.(월) ~2015. 1. 30.(금)	제1차시험	3. 6.(금)	3. 14.(토)	4. 10.(금)
		제2차시험	4. 10.(금)	6. 8.(월) ~6. 12.(금)	7. 31.(금)
		제3차시험	7. 31.(금)	8. 11.(화) ~8. 12.(수)	8. 14.(금)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5. 1. 26. ~ 1. 30.)

- 1. 26.(월) : 09:30 ~ 24:00
- 1. 27.(화) 1. 29.(목) : 00:00 ~ 24:00
- 1. 30.(금) : 00:00 ~ 17:00 (원서접수 마감일)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 **기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1. 26.(월) ~ 2. 6.(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2. 6.)에 한해 17:00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거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저소득층 해당자 제외)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결제방법을 휴대폰 결제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접수취소 기간 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2월 중(2. 1. ~ 2. 6.) 접수취소 건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환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안내하오니 결제수단 선택 시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만 해당).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기재사항(선택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지방인재 여부 등)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 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직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5. 2. 10.(화) ~ 8. 12.(수)까지입니다.

## 7.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 가. 제공대상

- ◆ 입법고시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시각 장애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시각장애 5급만 해당)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등) ·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경증 뇌병변 (4~6급)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등)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휠체어 전용책상(높이가 높은 책상)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청각 장애	2급~6급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 타	특수및중복장애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 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등)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서로다른 (상급)종합병원 에서 발급받아야 함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
-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1.2배),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함.

**다.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라. 제출기한** : 2015. 2. 6.(금) 도착 분까지 인정

◆ 시험장 입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별첨 서식)

②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③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원본만 인정[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제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예시)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 시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이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대상자(논문형시험에 한함)가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 등만을 신청하는 자 및 중증장애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는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가.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일반 응시자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Level 2)	625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	131	35	350	375	43(Level 2)	375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 201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 다. 성적 소명 방법

-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수험번

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을 통해 성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ex. 2013년 1월에서 2013년 4월까지 실시한 시험의 경우 등)에는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성적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조치

-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가. 기준점수(등급)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 ◆ 201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점수는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 성적 소명 방법

-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 필요한 경우 응시자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성적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조치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성적표를

위·변조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10.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일반행정·재경직류만 해당)

###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다. 지방인재의 범위

-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추가합격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마. 실시방법

-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

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바. 증빙서류 제출**

-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